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서 제3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최진혁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

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

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

층수를 5층 이하, 20미터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과,

가로주택정비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

건폐율을 50%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

층수를 4층 이하, 16미터 지 완화 받을 수 있게 하는

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- 자연경관지구는 산지·구릉지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나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- 그리고 그간에는 공공이 가로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만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받을 수 있었는데, 이를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와 상관없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(‘21.10)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게 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거환경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